화성시장애인체육회 규약

2022년 3월 3일 전부개정
2023년 2월 28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이 규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거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6조 규정에 의해 설립 된 화성시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외국에 대하여는 ParaSports HwaSeong '약칭:PSH'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화성지역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 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시키며,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가맹단체'라 한다)를 관리·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화성시 장애인의 체육·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1.)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화성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화성시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2. 본회 가맹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지역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지원, 대회·개최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전개
4. 시·군 및 해외 도시간의 장애인체육 교류
5.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 주관, 승인한 사업에 참가 및 주최, 주관, 후원, 지원 등
6.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훈련 및 참가
7-1. 특수학교·통합학급의 체육활동 지원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과 통합체육 수업보급
8.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8-1. 장애인체육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운영
9.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간
9-1. 관내 장애인체육 정책 실현 및 관계기관에 건의, 자문
10.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1. 장애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12. 장애인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13.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장애인체육의 육성

제 2 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화성시를 대표하는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가맹단체'라 한다)는 본회에 가맹 할 수 있으며, 정가맹단체, 준가맹단체, 인정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본회에 가맹하고자 할 경우,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제5조에 따라 경기도가맹단체로부터 우선 화성시지회로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경기도 가맹단체가 없는 경우 본회가 가맹승인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단체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가맹단체'는 정가맹단체로서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회원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2. '준가맹단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가맹단체로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본회 이사회 의결로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중앙가맹단체가 없어 본회로부터 가맹승인을 받은 단체는 추후 중앙가맹단체를 결성할 경우 경기지회로 가맹된 것으로 본다.

제6조(권리) 가맹단체는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 할 수 있다.
3. 본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제7조(의무) ① 가맹단체는 본회의 규약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가맹단체 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선임 및 개선이 있을 때마다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가맹단체장은 본회에서 정한 회비(이사회비와 동일)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 본회에 가맹은 본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서 확정한다.

제9조(탈퇴) ① 본회에 가맹한 단체의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본회에 가맹한 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서 탈퇴하게 한다.

③ 가맹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④ 정가맹 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1(관리단체의 지정)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기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맹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회의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2. 본회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가맹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4. 대한체육기구와의 분쟁
5. 가맹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6.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7. 가맹단체 평가에 따라 부진단체로 3회 지정 시
8. 경기력향상을 위해 본회의 직접 육성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가맹단체의 임원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정가맹단체는 총회 재적대의원수에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관리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에 다음의 선임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약간인
3. 이 사 :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4. 감 사 : 2인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제12조 제4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부회장의 임기제한 기간산정에 있어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사 및 감사의 임기제한 기간산정에 있어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한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 대의원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⑤ 임원의 임기 제한에 있어 보선된 임원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되, 회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② 이사 중 3인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하며 여성이 재적임원수의 4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02.28.)

③ 본회 당연직 이사는 화성시 체육진흥과장으로 하며 임기는 당위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02.28.)

④ 이사 및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되, 차기 대의원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부회장 선임에 대하여도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은 감사 외의 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⑥ 임원의 취임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 중 부회장 위촉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사임) ①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회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원이 사임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5조에서 정하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제12조 제3항에서 정하는 당연직이사의 경우 그 해당 직위를 상실한 때
3.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및 소속기관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사항
5. 제 4 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⑥ 임원이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임원이 본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 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이사회에서 결정된 일정금액 이상의 출연금(이사회비)을 매년 본회에 납부해야 한다. 단 당연직 임원은 제외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귀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본회 또는 가맹단체에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본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본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성)폭력,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해태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1. 해당종목 관련 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인자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①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대의원 총회

제17조(구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정가맹단체의 장 각 1인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당 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장이 총회 5일 전에 본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한 대의원을 교체할 수 없다.

제18조(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가맹단체의 가맹, 제명 및 강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 총회소집은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결의 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 할 수 있다.

⑤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다만 국가적인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19조의1(의장) ①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회장은 의장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출석대의원의 의결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장은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2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 5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자신이 본회와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표결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임원의 해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제의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원의 해임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당해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제23조의1(임원에 대한 징계)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요구를 하면 이에 따라야한다.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본회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 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본회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회 상벌 및 조정중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4조(임원의 발언권)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5조(의사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회의록의 작성) 회의록은 작성하여 의장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7조(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28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이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가맹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10. 부회장의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11.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사항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0조(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제14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순으로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제 3 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⑤ 이사회 소집권자의 기피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출석이사 의결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긴급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 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과반수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부의 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각종 위원회

제32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의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 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전문체육위원회
2. 생활체육위원회
3. 법제상벌위원회
4. 인사위원회

② 기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③ 본회는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와 제2항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와 제2항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 규약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7 장 가맹단체

제33조(기관) 가맹단체에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34조(임원선임 및 보고) ① 가맹단체의 임원은 해당 단체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고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도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규정) 가맹단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8 장 자산 및 회계

제46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 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 비
5.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또는 화성시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6. 사업수입금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 수입금

제37조(자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　금
3.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본회의 자산 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38조(재산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같다.

제39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적립시키기 위한 적립

제40조(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①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고 재산목록, 사업보고서 및 재산증감사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⑤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기금 및 적립금) ①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4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가맹단체 감사, 징계) ① 본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맹단체 사업 및 회계업무를 포함한 단체의 조직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 감사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본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제44조(회비) 가맹단체장은 제7조 4항 및 14조 8항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장 사무국

제45조(사무국) ① 본회는 사무집행을 위해 사무국를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또한, 직원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산하지부 포함)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6조(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47조(사무국 직제와 규정)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와 복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8조(경영고시) ①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 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 관련규정과 그 외 화성시장애인체육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49조(표창과 징계) ① 본회는 장애인체육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50조(규약개정) ① 본회의 규약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1조(시행세칙 등)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결정, 시행한다.

부 칙 (2022. 3. 3. 전부개정)

1. (**시행일**) 이 개정규약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28. 개정)

1. (**시행일**) 이 개정규약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